

「2026년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공고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소형어선 건조 및 실증사업의 효과적인 상용화 지원을 위해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공고하오니, 특구사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실증제품 상용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총 220백만원
 - **(지원기간)** '26. 8. 1 ~ '26. 11. 30.(4개월)
 -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39호(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 * 본사가 특구지역 외 기업의 경우 반드시 특구지역내 사업자가 있어야함

〈 제외대상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6.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지원프로그램

○ [지원 세부내용]

구분	지원 프로그램	지원 세부내용
실증 제품 상용화	시제품제작	▶ 타겟시장 및 수요처가 명확한 시제품개발 • 000 해외수출용 HDPE선박 ▶ HDPE선박 상용화를 위한 요소기술, 기자재 등 관련시제품개발
	시험평가 (장비활용)	▶ HDPE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성능평가, 안전성검증을 위한 시험평가 및 장비활용지원
	인증	▶ HDPE선박 사업화 및 시장진입을 위한 인증지원 • 수출 및 납품을 위한 선박, 기자재, 공장 등 인증지원
판로 개척	국내마케팅	▶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 행사장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동영상, 브로슈어 등 지원
	해외마케팅	▶ 해외전시회(상당회) 참가지원 • 행사장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동영상, 브로슈어 등 지원
	어민상담회	▶ 어민상담회 개최지원 • 행사장임차(부대시설포함), 운송비, 동영상, 브로슈어 등 지원
	특허출원	▶ 개발완료된 선박 및 기자재의 기술보호, 사업화연계,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디자인 등 제외)
	시장성분석	▶ 제품 중심의 타겟시장 분석, 경쟁제품 분석, 바이어 분석 등 사업화를 위한 시장성분석 지원
	컨설팅	▶ 사업화 및 기술개선 컨설팅 지원

- 해외전시회의 출장직원의 숙박비, 항공료 등은 민간부담금(현금)내에서 집행가능
- 국내마케팅, 해외마케팅은 행사별 상담일지 20건 이상 작성(어민상담회는 10건)
- 시제품제작은 반드시 사업화와 연계가 될 수 있는 수요처가 분명하거나 특정시장에 진입가능성이 있어야함(전시회, 어민상담회 등 판로개척 프로그램 1건이상 의무수행)
- 시장성분석, 컨설팅 등은 전남TP 해외비즈니스센터와 연계 가능(기업요청시)
- 지원금은 부가세·관세 등 환급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비용만 지원
-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기업지원 사업비의 2/12 이상으로 편성. 다만, 현금비율은 아래와 같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기본	협약일자~7년미만	협약일자~3년미만
40%이상	40%이상	20%이상

○ [지원규모]

- 아래의 프로그램은 건별 최대지원금이며, 기업당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가능함
- 본 사업의 지원기간은 11월까지로 기간내 모든 결과물이 제출되어야함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구분	프로그램	최대지원금	결과물
실증제품 상용화	▶ 시제품제작	30백만원	시제품, 성능평가보고서 등
	▶ 시험평가(장비활용)	10백만원	시험평가(장비활용)보고서
	▶ 인증	10백만원	인증서
판로개척	▶ 국내마케팅	15백만원	결과보고서,상담일지
	▶ 어민상담회	10백만원	결과보고서,상담일지
	▶ 해외마케팅	30백만원	결과보고서,상담일지
	▶ 특허출원	3백만원	특허출원증
	▶ 시장성분석	5백만원	시장성분석보고서
	▶ 컨설팅	5백만원	컨설팅보고서

3 신청방법 및 접수안내

- (접수기간) '26. 7. 20. ~ '26. 8. 3.
- (신청방법) 데이터플랫폼 온라인 접수(<https://data.jntp.or.kr>)
 - 접수마감일 17:00 이후 전자접수가 마감되므로 마감시간 준수
 - 플랫폼 회원가입 승인절차가 2일정도 소요될수 있으므로 미리 회원가입 요망
- (관련서식) (재)전남테크노파크(<http://www.jntp.or.kr>) 지원사업 게시판
- (접수처 및 문의처)

부 서	담 당 자	연 락 처	E-mail
주력산업본부 (조선해양센터)	정재홍 연구원	061-460-5215	jjh0805@jntp.or.kr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예비진단)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 → (대면) 선정평가
- **(평가기준)** 선정평가를 진행하며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
- * 본 과제는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화매출 및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위주로 지원할 방침임 (수출계약실적 등)

<평가지표(안)>

항 목	지 표	배 점
지원 필요성(40)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20
	○ 지원대상제품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20
지원내용의 타당성(35)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25
	○ 지원금액의 적정성	10
기대효과(25)	○ 지원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15
	○ 고용 및 매출 증대	10

5

추진일정

공 고	⇨	신청서 접수	⇨	예비진단	⇨	선정평가	⇨	선정결과 통보·확정	⇨	협약 체결
'26.7.20~8.3		'26.7.20~8.3		'26.8.4~6.		'26.8.11		'26.8.12		'26.8.14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특구사업자 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실시
 - 일시 : 2026. 7. 22.(수) 14:30
 - 장소 : 전남테크노파크 조선해양센터 2층 중회의실
 - 참석대상 : 특구사업자 중 안착화지원 프로그램 신청 예정 기업 등

6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 사업수행계획서[붙임1]	1부	HWP, PDF 제출
2	○ 신청자격 적성성 확인서[붙임2]	1부	
3	○ 사업자등록증(신청기업, 공급기업)	각 1부	
4	○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결산재무제표	1부	
5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1부	
6	○ 소요예산 관련 견적서	1부	별도제출

7

유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기업부담으로 함
- 계획서 상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평가결과에 따라 제시된 지원내용 중 선정되지 않는 과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비가 조정될 수도 있음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발견 시 지원이 취소 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 취소할 수 있음
- 협약일 이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음
- 선정결과는 개별로 통지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 취소,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할 수 있음